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조업·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조약 등’에서 ‘외국통상조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 지원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569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에 ‘외국통상조치’를 추가함(안 제6조)

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위탁 업무에 ‘법 제8조에 따른 판로 개척 지원’을 추가함(안 제24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부처 협의완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의”를 각각 “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의 상대국의 자연”을 “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 상대국의 자연”으로, “등의 상대국의 법률”을 “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 상대국의 법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의 상대국의 자연”을 “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 상대국의 자연”으로, “등의 상대국의 법률”을 “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 상대국의 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8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 지원

제24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에 따른 판로 개척 지원

이 영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 ~ ⑧ (생략)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⑩ 삭제				
⑪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비스 무역”이란 대한민국과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⑪ ----- ----- ----- <u>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u>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⑫ (생략)		⑫ (현행과 같음)		
⑬ 제11항제3호에서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영토 안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⑬ ----- ----- ----- <u>등이</u> ----- <u>나 외국통상조치의</u>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⑭ 제13항의 상업적 주재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법인은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인으로 본다.		⑭ ----- ----- ----- ----- <u>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u> ----- -----.		

1. 통상조약 <u>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u>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국내법인 2. 통상조약 <u>등의 상대국의 자연인 또는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u>이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 또는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갖는 국내법인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삭 제 2. ~ 4. (생략) <u><신설></u> 6. ~ 12. (생략)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1. ----- <u>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 상대국의 자연-----</u> ----- <u>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 상대국의 법률-----</u> ----- 2. ----- <u>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 상대국의 자연-----</u> ----- <u>등이나 외국통상조치의 상대국의 법률-----</u> ----- -- 제24조(업무의 위탁) ① ----- ----- ----- -----. 2.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8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판로 개척지원</u> 6. ~ 12. (현행과 같음) ② ----- ----- -----
---	---

위탁한다. 1. ~ 5. (생략) <u><신설></u> 7. ~ 14.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14조제7항에서 준용하</u> <u>는 법 제8조에 따른 판로 개척</u> <u>지원</u> 7. ~ 14.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	
연 락 처	(044) 203 - 5766